

‘26. 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

김 제 시 의 회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(안)

의 안 번 호	2026-45
--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7. 13.

제 안 자 : 운영위원회

1. 주 문

- 김제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및 선임

- 위원 정수 : 7명
- 위원 선임 : 의장추천(1명) • 행정복지위원회(3명) • 경제도시위원회(3명)

나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

- 2026년도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

-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

- ※ 298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심사 예정되어 있는 바, 시급성에 따라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의 위원을 사전 추천 진행(의장에게 보고)

-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의 건 의결

- ※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선임의 건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하여 호선

다. 임기 : 본회의 의결 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(1년간)

라. 활동장소 : 2층 소회의실 등

3. 관련법규 : [붙임1]

- 지방자치법 제64조
-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~제9조

【붙임1】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議案(의안)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조정 및 추천

○ 관련근거 :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

구 분	의 원 명	추 천	비 고
행정복지 위원회			
경제도시 위원회			

2026. 7. .

김제시의회 의장 0 0 0 (서명)